

# 산업안전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시멘트제조 공장에서 Plant이설 공사를 도급계약 (상시근로자 7명)을 체결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

〈을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인 바 제조업의 경우라 할 지라도 제조공정과 무관한 건설 공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로 시멘트제조 공정이 아닌 건설 공사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동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갑설이 타당함)



폐사는 조달청 외자 구매과에서 실시한 하수처리장 기자재 구매(설치 및 시운전 역무 포함)건에 대해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건의 계약금액은 245억원이며, 계약이행 일정은 계약후 3개월간 제작도면 설계 1995년 12월 31일까지 기계납품 완료 1996년 11월 15일까지 설치, 시운전 완료 조건임. 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시기는

〈갑 설〉

제작도면 설계 및 공장에서 기계제작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없으므로 현장에 안전관리기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개시되는 시점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면 됨.

〈을 설〉

현장에서 실제 설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업무만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즉시 배치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제75호) 제209조의 규정에 의거 콘베이어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작업하는 위치에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동일 콘베이어(약400~500)상에 일정거리 (10~20mm)간격으로 비상정지장치(Emergency Push Button)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콘베이어 연장길이가 30m미만일 경우 콘베이어 끝부분에 비상정지 장치를 부착할 경우 법적 인정 여부
  - 상기와 같이 안전장치가 콘베이어 비상정지장치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기준 및 정의
- (2) 크레인 제작·안전·검사기준(노동부고시제90-79호)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주행로상에 2대이상의 크레인이 병렬로 설치된 것(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하고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동일 경로상에 2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1대는 Standby용이고 1대만 운행할 경우에는 충돌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 “바닥에서 조작하며 화물과 운전자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제외”란 크레인에 운전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실은 사용하지 않고 지상에서 Remote Controller로만 운전하는 것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 (1) 일반적으로 콘베이어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장소, 설치간격 및 수량 등은 콘베이어의 운전(작업)방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즉, 작업자와 가장 근접한 장소 혹은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조작하여 즉시 콘베이어 정지가 가능하다면 안전장치로 인정 할 수 있음
- 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콘베이어의 끝(Tail)부분에서 작업자를 배치하여 작업하는 경우라면, 작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동 콘베이어의 끝부분에 버튼식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동 비상정지장치를 조작, 즉시, 콘베이어 정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안전장치로 인정할 수 있음.



- 만약 작업자가 콘베이어 전 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하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예 :로우프식 푸쉬풀방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2) 운전실을 갖춘 크레인도 1대가 Standby용이라 할지라도 항상 사용 대기 상태이며, 이 경우 두 크레인이 동시에 동작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 경로상에서의 충돌 위험은 항상 존재하므로 충돌방지장치의 설치 불가피 함.

- Remote Controller에 의한 운전방식은 작업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원격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물과 운전자가 근거리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분진 및 증기 등의 열악한 작업조건으로 시계불량 및 전자방해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Controller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충돌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부칙 제2항(경과조치)에 의하면,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이미 계상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종전고시에 의한다”라 되어 있는 바

- 당 현장은 91년부터 전체 계약에 의한 장기 계속공사로 매년 연차 발주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바, 금번 변경 고시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에 대하여

(1) 장기계속공사로 91년에 전체 공사가 계약되었으므로 종전의 고시(노동부고시 제91-57호)에 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2) 91년에 전체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연차계약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되므로 변경고시일(노동부고시 제94-45호)을 기준으로 이전 연차계약분은 종전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이후 계약은 변경 고시의 표준안전관리비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3) 또한 상기 (2)항을 적용시 본 현장은 '94.5.25 착공하여 '95.9.29로 준공예정인 공사로 '94.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종전 및 변경 고시로 분류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귀 현장이 91년부터 전체계약에 의한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연차 발주 계약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면 최초 계약시점의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적용해야 할 것임



'91년에 발주된 연차공사라면 95년도 공사도 고시 제91-57호를 적용하여야 함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하자보수 전체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기간은 착공시부터 준공 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공사로 보아야 함



자체 발주공사중 일부를 전문 건설업체에게 사업주의 입장에서 원도급 계약 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발주자가 시공자이면서 전문 건설업체에 부분적으로 원도급을 줌)  
- 원도급계약자(전문 건설업체)가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 신고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전문 건설업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그에 따른 재해통계도 전문 건설업체에게 산입되는 것이 아닌지  
-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춰 보건대 이 때의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한 의무이행 대상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동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것임  
아울러 발주공사를 자체 시공할 경우, 이때 시공자는 건설업법상 소정의 자격 및 지위(면허취소 등)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시공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자체 발주공사(즉, 발주자겸 시공자)라 하여 (다른 시공자에 비해)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한 이유가 없을 것임.



발주자가 전문 건설업체에 도급을 준 일부공사가 (원)도급인지,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2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보험관계를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예방의무가 전가되는 것은 아님(별개의 차원임)

